

5-06-0600 상생미래대연계 상생매담대 통합약정서(판매기업용) - 상환청구권 있는 경우 개정대비표

현 행	개 정 후	비 고
<p>포괄한도 거래약정서 (기업용) (생 략)</p> <p>추가약정서(기업용) (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용)</p> <p>제3조 (발주명세의 전승, 취소 및 변경) ① ~ ② (생 략) ③ 구매기업이 발주명세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득하거나 정당하게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고, 취소에 대하여 은행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기로 합니다. ④ ~ ⑤ (생 략)</p> <p>제7조 (면책) ① 본인의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의 또는 전산조작오류 등 과실로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를 은행에 전송한 경우, 은행이 이를 본인에 의한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로 믿고 이에 따라 본인에 대한 대출을 취급한 이상, 은행에게 그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합니다.</p> <p>추가약정서(판매기업용) 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,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) (생 략)</p> <p>추가약정서(자동기한연장용)</p>	<p>포괄한도 거래약정서 (기업용) (좌 등)</p> <p>추가약정서(기업용) (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용)</p> <p>제3조 (발주명세의 전승, 취소 및 변경) ① ~ ② (좌 등) ③ 구매기업이 발주명세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득하거나 정당하게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고, 취소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니다. ④ ~ ⑤ (좌 등)</p> <p>제7조 (면책) ① 본인의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의 또는 전산조작오류 등 과실로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를 은행에 전송한 경우, 은행이 이를 본인에 의한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로 믿고 이에 따라 본인에 대한 대출을 취급한 이상, 은행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니다.</p> <p>추가약정서(판매기업용) 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,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) (좌 등)</p> <p>추가약정서(자동기한연장용)</p>	<p>문구 순화</p> <p>문구 순화</p>

<p>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) (생 락)</p> <p>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(기업용) (포괄계약) (생 락)</p>	<p>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) (좌 등)</p> <p>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(기업용) (포괄계약) (좌 등)</p>	
---	---	--